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지 방 공 무 원 복 무 규 정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일·가정 양립 가능한 근무여건 조성을 위하여 자녀 또는 손자녀가 어린이
집등을 졸업한 후 상급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돌봄이 필요한 경우 가족
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의 회계감사를 실시하는 공무원에게 공가를 부여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인사혁신처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6제10호 중 “참석할”을 “참석하거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5조에 따른 회계감사원으로 선임되어 노동조합의 회계감사(연 2회로 한정한다)를 실시할”로 한다.

제7조의7제9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자녀 또는 손자녀가 어린이집등을 졸업한 후 상급학교(「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는 제외한다)에 입학하기 전까지 돌봐야 하는 경우
제7조의7제10항 중 “자녀(같은 항 제4호의 경우에는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인 자녀로 한정한다)를 돌보기 위한”을 “자녀(같은 항 제5호의 경우에는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인 자녀로 한정한다)를 돌보기 위한”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의6(공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 의장은 소속 공무원(제10호의 경우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3제2항에 따른 근무시간 면제자는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직접적으로 필요한 기간 또는 시간을 공가로 허가해야 한다.	제7조의6(공가) (현행과 같음)
1. ~ 9. (생략)	1. ~ 9. (현행과 같음)
10.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교섭위원으로 선임(選任)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에 참석하거나 같은 법 제17조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에 따른 대의원회(「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 노동조합의 대의원회를 말하며, 연 1회로 한정한다)에 <u>참석</u> 할 때	10. ----- ----- ----- ----- ----- ----- ----- ----- ----- ----- ----- <u>참석하거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5조에 따른 회계감사원으로 선임되어 노동조합의 회계감사(연 2회로 한정한다)를 실시</u>

제7조의7(특별휴가) ① ~ ⑧(생략) ⑨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1. 2. (생략) <신설> 3. 4. (생략) ⑩ 제9항에 따른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으로 하되, 자녀(같은 항 제4호의 경우에는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인 자녀로 한정한다)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는 해당 공무원의 자녀(제9항제1호에 따른 어린이집 등에 재학 중이거나 미성년인 자녀 또는 장애인인 자녀를 말한다)수에 1을 더한 일수까지를 연간 유급휴가 일수로 한다. 다만, 장애인인 자녀가 있는 공무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할 때 제7조의7(특별휴가) ① ~ ⑧(현행과 같음) ⑨ (현행과 같음) 1. 2. (현행과 같음) 3. 자녀 또는 손자녀가 어린이집 등을 졸업한 후 상급학교(「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는 제외한다)에 입학하기 전까지 돌봐야 하는 경우 4. 5. (현행 제3호 및 제4호와 같음) ⑩ ----- -----자녀(같은 항 제5호의 경우에는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인 자녀로 한정한다)를 돌보기 위한----- ----- ----- ----- ----- ----- ----- ----- ----- ----- ----- -----
--	--

또는 부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연간 유급휴가 일수에 1일을 더한 일수까지 연간 유급휴가 일수 로 한다.	----- ----- ----- -----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연 락 처	(044) 205 - 3357